

200海里 制度와 漁業合作投資에 관한 小考

A Study on the Overseas Investment of Fisheries under the 200 Nautical Miles System

池 應 祥*

Ung-Sang Chee

〈目 次〉

- | | |
|------------------------|----------------------|
| 1. 序 言 | (5) 200海里 體制의 背景과 展望 |
| 2. 200海里 制度 | 3. 遠洋漁業의 運營方式 |
| (1) 從來의 海洋秩序 | (1) 入 漁 |
| (2) 200海里 體制에 의 移行 | (2) 合作投資 |
| (3) UN 海洋法協約의 内容 | 4. 結 語 |
| (4) 國內立法에 의 한 200海里 水域 | |

1. 序 言

1982年 4月 第3次 UN國際海洋法會議에서는 12海里 領海와 200海里 經濟水域 등을 根幹으로 하는 協約案이 採擇되었다. 또한 이보다 몇년 앞선 1977年 3月부터 美國과 蘇聯이 200海里 漁業水域을 設定함으로써 國際海洋秩序는 이제 自由海洋時代에서 分割占據時代로 突入하였다. 200海里 水域制는 우리 나라와 같이 遠洋漁業에의 依存度가 높은 國家들에게 生產, 輸出, 雇傭 등 여러 面에서 莫大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 對應策의 樹立이 必要하게 되었다.

本 小考에서는 200海里 制度의 概略的인 内容과 問題點, 그리고 200海里 體制下에서 效果的인 適應方法의 하나인 海外漁業投資에 관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2. 200海里 制度

(1) 從來의 海洋秩序

近年까지의 國際海洋秩序의 基本은 公海自由의 原則이었다. 이는 17世紀初 네델란드의 法學者인 그로티우스(H. Grotius)의 海洋自由(mare liberum)論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로티우스는 當時 植民地擴大時代에 一部國家들이 自國의 植民地, 漁業開發, 貿易保護 등을 위해 海洋을 分割占有하고 있음에 대해 네델란드의 海洋進出을 도모하고자 海洋에서의 自然法의 復活을 주장한 것이다. 海洋自由論에 대하여 英國의 셀든(J. Selden)은 海洋占有論으로써 自國의 既得權을 保護하려 하였지만,

* 統營水產專門大學 專任講師

수 산 경 영 론 집

公海自由의 原則은 資本主義의 哲學인 自由放任(laisser-faire)의 先驅로서 점차 定着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領海 3海里制와 結付되어 좁은 領海와 넓은 公海라는 海洋秩序가 形成되었다.

이러한 公海自由의 原則은 漁業과 관련하여 볼 때 水產資源은 無盡藏하다는 思考方式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第2次 世界大戰 이후 狀況은 달라졌다. 즉 漁船이 大型化되고 漁法이 能率化됨에 따라 漁場이 점차 遠隔化되고, 各國의 漁船이 同一漁場에서 操業하게 되자 資源의 荒廢와 操業上의 紛爭을 防止할 必要가 생겼다. 여기서 公海의 自由는 單純하고 完全한 自由가 아니라 限界를 지니게 되었고, 當事國間의 協定에 의해 資源의 保存과 漁業調整을 圖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들 國際漁業協定은 多개의 경우, 水產資源의 保全과 持續的最大生產(MSY)의 達成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漁業規制의 手段으로서는 ① 漁法·漁具의 制限 ② 總漁獲量의 規制 ③ 特定國의 漁業排除라는 方式을 取하고 있다.

한편, 1945年 9月 28日 美國의 트루먼大統領은 大陸棚과 漁業保存水域에 관한 두 가지宣言을 行한 바 있는데, 前者は 美國에隣接한 大陸棚의 地下 및 海床의 天然資源에 대한 美國의 主權的 權利를 主張한 것으로, 當時 始作된 멕시코灣의 海底石油開發에 있어 他國을 排除하고자 한 것이었고, 後자는 美國과 關係國과의 合意下에 沿岸에 接續하는 公海에 資源保存水域을 設定하고 이 안에서의 漁業活動은 規制와 管理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 트루먼宣言은 第2次 大戰後의 植民地, 從屬國의 民族解放運動과 내셔널리즘의 高揚 속에서 中南美 諸國에 커다란 刺戟을 주어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나마 그리고 韓國 등이 大陸棚 및 그 上部水域의 資源에 대한 權利를 主張하였다. 그리고 1947年에는 칠레와 페루가 새로운 發想으로 沿岸水域 즉, 距岸 200海里內의 天然資源에 대한 權利를 主張하였는데, 이는 南美의 太平洋岸의 海底는 傾斜가 急激하여 大陸棚을 管轄權의 基準으로 삼는 方法은 自國에 不利하기 때문이었다. 200海里의 根據는 南美 太平遠岸을 沿하여 北向하는 페루海流의 幅이 200海里로서 여기에는 老大 한 量의 水產資源이 分布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 후 中南美 諸國은 領海 또는 資源水域으로서 200海里主義를 展開하고, 1952年에는 칠레, 페루, 에콰도르가 距岸 200海里까지의 排他的인 主權 및 營轄權을 主張하는 산티아고宣言을 採擇하였다.

이처럼 海洋制度를 둘러싼 混亂이 繼續되자 이를 解決하기 위하여 開催된 것이 1958年과 1960年的 UN 第1次, 第2次 海洋法會議이었다.

第1次 海洋法會議는 그 結果로서 海洋의 利用과 管理에 관한 4個의 條約 즉, ① 領海 및 接續水域에 관한 條約 ② 公海에 관한 條約 ③ 大陸棚에 관한 條約 ④ 漁業 및 公海의 生物資源의 保存에 관한 條約을 成立시켰다. 이 가운데 公海에 관한 條約은 公海自由의 原則下에 航行의 自由, 漁獲의 自由, 海底電線 및 파이프라인 敷設의 自由 및 公海上空을 飛行하는 自由를 들고 있다. 그러나 大陸棚에 관한 條約에서는 大陸棚의 天然資源을 開發하기 위한 主權的 行使를 沿岸國에 認定하고 있고, 定着性生物資源도 大陸棚天然資源에 包含시키고 있다.

漁業 및 公海의 生物資源의 保存에 관한 條約은 公海에 있어서 生物資源의 保存과 紛爭의 解決에 관한 基本原則을 定하는 條約이다. 이 條約에서는 MSY를 生物資源의 保存措置의 目的으로 내걸고 있다. 1國만이 漁業에 從事하고 있는 海域에서는 生物資源의 保存措置는 當事國이 取하지만, 여려

200海里 制度와 漁業合作投資에 관한 小節

나라가 漁業에 從事하고 있는 公海에서는 한 나라의 要請에 응하여 生物資源의 保存措置를 定하는 交涉을 行하여야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또한 이 條約에서는 沿岸國의 特殊한 地位를 認定하고 있다. 즉 沿岸國은 領海에 隣接하는 公海에서 漁業을 行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當該海域의 生物資源의 保存措置에 參加할 權利를 가지고, 沿岸國의 要請에 따라서 漁業國은 生物資源의 保存措置의 交涉을 行할 義務가 있고, 그 밖에도 그 交涉이 合意되지 않을 때에는 沿岸國은 生物資源의 保存措置를 一方的으로 取할 수 있다. 이처럼 1958年の UN海洋法은 公海에 있어서 漁業自由의 原則을 基礎로 하고 公海의 生物資源의 保全措置는 當事國間의 交涉에 의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다.

한편 1960年の 第2次 UN海洋法會議에서는 領海의 外側에 沿岸國의 主權의 權利를 認定하는 漁業專管水域을 設定하려는 움직임이 活潑해졌다. 특히 領海幅을 6海里로 하고 그 外側에 距岸 12海里의 漁業水域을 設定하고, 沿岸國이 排他的管轄權을 行使할 수 있도록 하는 美國, 카나다의 共同提案은 비록 否決되기는 하였으나 漁業水域設定의 思考方式이主流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合意는 成立하지 않았고, 그 後 各國은 獨自의 判斷으로 一方的 漁業專管水域을 設定하는 움직임이 活潑해져 國際海洋秩序는 더욱昏迷해지게 되었다.

(2) 200海里 體制에의 移行

두 차례에 걸친 UN海洋法會議에도 불구하고 領海 및 漁業水域의 問題는 解決되지 않았으므로 그 後 關係國間의 問題를 處理하기 위하여 2國間 또는 多國間의 協定을 締結하는 움직임이 強해졌다. 이런 가운데 美國과 蘇聯은 領海의 幅을 12海里로 確定하기 위한 國際會議를 希望하고 있었고, 中南美, 아시아, 아프리카의 發展途上國들은 海洋制度의 包括的改編을 要求하게 되었다. 이러한 發展途上國의 態度의 背景에는 強한 資源대셔널리즘의 主張이 있었으며, 이들은 계속 200海里의 領海를 宣言하였다.

1972年 1月에 캐나다는 先進國과의 妥協을 圖謀하고자 排他的 經濟水域을 提案하였다. 즉 領海의 外側에 距岸 200海里까지의 水域을 設定하고, 그 안의 資源(鑛物 및 生物), 海洋污染의 防止와 管理, 科學調查의 實施, 構造物의 設置에 대하여 沿岸國은 主權의 權利를 가지지만, 船舶의 航行, 航空機의 飛行, 海底電線·파이프라인의 敷設 등은 自由로운 것으로 認定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背景下에 第3次 UN海洋法會議의 第1會期는 1973年 12月 뉴우요오크에서 始作되었고, 條約의 數를 複數로 하지 않고 全體를 一括한 單一條約을 採擇하기로 하였다. 以後 繼續된 數次의 會期에서는 經濟水域의 内容과 認定與否, 深海海底鑛物資源의 開發問題 등을 둘러싸고 各國間에 利害가 對立되어 會議가 進陟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會議의 終結을 기다리지 않고, 經濟水域概念 가운데 漁業에 관한 部分만을 先取하여 漁業專管水域을 一方的으로 設定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즉 1975年 10月 멕시코가 美國참치漁船의 排除를 目的으로 200海里 經濟水域의 設定을 發表하고, 이어 英國의 대구트롤漁船의 排除를 目標로 아이슬란드가 漁業專管水域을 200海里로 擴大하였다. 이때부터 先進國의 움직임은 活潑해져 1977年에 들어서면서 많은 先進國이 200海里 漁業專管水域을 宣布하게 되었다. 즉 同年 1月에 카나다, 노르웨이, EC가, 3月에 美國의 “1976年 漁業保存管理法”이 發效하고, 蘇聯의 “蘇聯邦沿岸隣接海域에 있어서 生物資源의 保存 및 漁業規制를 위한 暫

수 산 경 영 론 집

定措置에 관한 蘇聯邦最高會議 幹部會令”이 實施되었다. 이 兩大強國의 動向은 世界의 動向에 決定的인 영향을 주어 遠洋大國인 日本도 7月에 “漁業水域에 관한 暫定措置法”을 發效시켰다. 그 後 形態는 領海, 經濟水域, 漁業專管水域으로 여러가지이지만, 200海里水域을 宣布한 國家는 增加되었고(1983年末 現在 全世界沿岸國 139個國中 89個國이 宣布), 마침내 1982年 4月 30日 “UN海洋法條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採擇되었다. 다만 表決過程에서 프랑스를 除外한 EC諸國, 소聯, 東유럽諸國이 棄權하고, 美國을 包含한 少數의 國家가 反對하였다. 美國이 反對한 것은 레이건政府의 소위政策再檢討(policy review)의 結果로서 同協約의 深海海底資源의 開發方式에 不滿이 있었기 때문이다.¹⁾

(3) UN 海洋法協約의 內容

UN海洋法協約 가운데 生物資源의 管理·利用에 관한 大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沿岸國의 經濟水域에 대한 主權的 權利

協約 第56條 第1項은, 沿岸國은 排他的 經濟水域에 있어서 海底, 下層土 및 上部水域의 生物 또는 非生物 自然資源을 探查, 利用, 保存 및 管理하기 위한 主權的 權利와, 海水, 海流 및 海風을 利用한 에너지生產과 같은 同水域의 經濟的 探查 및 利用을 위한 其他活動에 관한 主權的 權利와 人工島嶼, 施設 및 構造物의 設置 및 使用, 海洋科學調查, 海洋環境의 保護 및 保存에 관한 管轄權 등을 갖는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主權的 權利라는 用語의 意味는 漁業資源에 관해서 말한다면, 沿岸國이 經濟水域内에서 漁業資源을 探查 또는 開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他國으로서는 沿岸國의 同意를 얻지 않고서는 이것을 探查 또는 開發할 수 없고, 또한 資源의 保存·管理에 관해서도 他國이나 國際機關의 關與를 排除하고 오로지 沿岸國의 判斷만으로 行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許容漁獲量의 決定

漁業資源의 保存을 도모하면서 適正히 利用하기 위해서는 許容漁獲量을 正確히 算定할 必要가 있는데, 協約 第61條 第1項은, 沿岸國은 自國의 排他的 經濟水域內의 生物資源의 訸容漁獲量을 決定하여야 한다고 單純하게 規定함으로써 他國이나 國際機關에 의한 干涉 내지 決定의 慾意性에 대한 牽制의 餘地를 排除하고 있다.

한편 同條 第2項은, 沿岸國은 利用可能한 最善의 科學的 證據를 고려하여, 適切한 保存 및 管理措置를 通하여 濫獲으로 因하여 排他的 經濟水域內 生物資源의 維持가 危殆롭게 되지 않도록 保障하여야 하며, 適切한 경우 沿岸國과 權限있는 小地域的, 地域的, 世界的 國際組織은 이를 위해 協力해야한다고 規定함으로써 濫獲防止를 確保하고 있다.

同條 第3項은, 沿岸國의 保存 및 管理措置는 沿岸漁業社會의 經濟的 必要와 開發途上國의 特別한 要求를 包含한, 關聯 環境的, 經濟的 要素에 의하여 制限되고, 또한 漁撈形態, 魚族間의 相互依存

1) 川崎健·田中昌一, 200カイリ時代と日本の水産, 恒星社, 厚生閣, 1981, 가운데 鶴見一夫, “200カイリ時代の法的諸問題”, p.29.

200海里 制度와 漁業合作投資에 관한 小考

性 및一般的으로 勸告된 小地域的, 地域的, 世界的 國際最少基準을 고려한, 最大持續生產量을 가져올 수 있는 水準으로 漁獲魚種의 資源量을 維持 또는 回復하도록 考察되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規定은 MSY의 達成에 관한 規定이나, 그 決定基準으로서 生物學的 要因과는 異質的인 즉, 環境的, 經濟的 要因이 混入되어 있어 主觀的인 慾意性을 排除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③ 最適利用의 原則

協約 第62條 第1項은, 沿岸國은 第61條의 規定을 侵害함이 없이, 排他的 經濟水域內의 生物資源의 最適利用目標를 増進시켜야 한다고 規定함으로써 最適利用(optimum utilization)의 原則을 採擇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最適의 概念은 오로지 生物學的 觀點에서만이 아니라 環境的, 經濟的, 社會的인 要因 등을 고려하여 最適生產을 決定하고, 그 限度内에서 資源利用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完全利用(full utilization)의 概念下에 있어서 보다도 沿岸國의 主觀的 判斷이 보다 強하게 介在될 可能性이 있으며, 最適利用이라는 것도 沿岸國의 直接的인 義務가 아닌 單純한 努力目標에 不過하다²⁾.

④ 沿岸國의 漁獲能力의 決定

協約 第62條 第2項 前段은, 沿岸國은 排他的 經濟水域의 生物資源에 대한 自國의 漁獲ability을 決定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는 沿岸國이 自國의 漁獲ability을 스스로 決定함으로써, 科學의 根據에 의한 客觀的 決定이 行하여질 保障이 없고 多分히 慵意的인 決定이 行하여질 憂慮가 높게 될 것이다.

⑤ 剩餘分의 原則

한편 同條 同項 後段은, 沿岸國이 全體 許容漁獲量을 漁獲할 能力이 없는 경우, 協定 또는 其他約定을 통하여 沿岸國이 定한 條件, 法令에 따라 內陸國 및 地理的 不利國 특히 開發途上國과 關聯, 特別한 考慮를 하여 許容漁獲量의 剩餘分에 대한 他國의 入漁를 認定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는 剩餘分이 있더라도 沿岸國과의 入漁協定의 締結없이는 他國이 直接 이를 利用할 수 없다는 것으로, 沿岸國側에서 各種의 不利한 條件을 불여 協定이 成立할 수 없을 경우가 發生할 수도 있고, 이 때에는 他國은 入漁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剩餘分의 配分에 있어서 優先的 考慮는 慣習의인 漁業國에 대해서가 아니라 開發途上의 內陸國, 地理的 不利國에게 주어지고 있으므로 慣習의인 漁業國의 既得權인 實績의 尊重과는 거리가 멀다.

⑥ 慣習의인 漁業國의 實績尊重

同條 第3項은, 沿岸國이 排他的 經濟水域內에서 他國의 入漁를 認定함에 있어서 모든 關聯要素, 특히 同水域內 生物資源의 關聯沿岸國의 經濟 및 其他 國家의 利益에 대한 重要性, 內陸國 및 地理的 不利國의 權利, 剩餘分 漁獲에 대한 小地域 또는 地域內 開發途上國의 要求, 所屬國民이 同地域에서 慣習의으로 操業을 行하여 왔거나, 魚族의 調查 및 識別에 實質的 努力を 해온 國家의 經濟的混亂을 極小化할 必要性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慣習의인 漁業國의 經濟的混

2) 川崎健・田中昌一, 前揭書, p.38.

수 산 경 영 론 집

亂(economic dislocation)을 極小化할 必要性은 沿岸國이 排他的 經濟水域에의 入漁를 認定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한가지 要因에 不過하고, 따라서 그 必要性이 優先的으로 고려될 保障은 없다. 또한 經濟的 混亂이란 表現은 經濟的 惡影響(adverse economic consequences) 또는 經濟的 打擊(economic disturbance)이라는 表現보다는 훨씬 強한 意味를 가지고 있어 그 나라의 經濟가 機能하지 않는 狀況을 가리킨다고 보아 결국 特定漁業에 있어서의 經濟上의 打擊만으로는 고려對象이 되지 않고 關聯漁業에 대한 打擊이 그 나라 經濟全體에 대한 打擊으로 될 경우에만 고려對象이 되리라는 解釋의 餘地가 있다.³⁾ 따라서 實績國에는 어느 程度의 操業의 繼續可能性이 남아 있을 뿐, 量的인 面에서의 實績의 保障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⑦ 漁業紛爭의 解決方法

200海里水域制度가 採擇된다면 無許可操業, 漁業規則違反 등을 들러싼 各種 漁業紛爭이 頻發할 것이다. 海洋法協約下에서는 漁業條項의 解釋·適用을 들러싼 紛爭은 通常의 紛爭解決의 경우와 똑같이, 우선 UN憲章 第33條 第1項에 따른 平和的手段에 의하여 解決을 도모해야 한다(協約 第279條). 또한 [當事國이] 合意하는 경우에는 問題를 調停節次에 付託할 수도 있다(協約 第284條). 그러나 이러한 任意的인 節次로 紛爭이 解決되지 않을 경우에는 一方의 紛爭當事者의 要請에 따라 強制節次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위해 協約의 當事國은 이 協約의 署名·批准 등을 行함에 있어 이 協約의 解釋·適用에 관한 紛爭解決을 위하여 國際海洋法裁判所, 仲裁裁判所, 特別仲裁裁判所 중 하나 또는 그 上을 選擇하도록 하고 있다(協約 第287條 第1項).

問題가 되는 것은 第297條 第3項으로 이에 의하면, 沿岸國은 極端의인 경우, 즉 ① 沿岸國이 適切한 保存 및 管理措置를 통하여 排他的 經濟水域內의 生物資源의 維持가 深刻히 威脅받지 않도록 保障할 義務를 明白히 履行하지 않는 경우 ② 沿岸國이 他國의 要請에도 불구하고 同國이 漁獲에 關心있는 魚種에 대한 許容漁獲量 및 自國漁獲能力을 決定하는 것을 憲意的으로 拒否한 경우 ③ 沿岸國이 確立한 條件에 따라 自國에 存在한다고 宣言한 剩餘의 全部 또는 一部를 他國에 割當하는 것을 憲意的으로 拒否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排他的 經濟水域內의 生物資源에 관한 主權的 權利 또는 許容漁獲量, 自國의 漁獲能力, 他國에 대한 剩餘量割當 및 自國의 保存管理法令의 確立을 決定할 裁量權을 包含하는 主權的 權利의 行使와 關聯된 紛爭은 強制的 調停節次에 付託할 수 없도록 規定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事項에 關해서는 沿岸國의 自由裁量事項으로서 이를 國際的인 場所에서 다를 길이 막혀 있다. 또한 그 밖에도 當事國間의 紛爭은 國際法上 必要로 하는 경우, 國內의 救濟(local remedies)를 終了한 後에 라야만 強制節次에 付託할 수 있게 되어 있어(協約 第295條) 결국 漁業紛爭을 國際的인 紛爭解決節次에 付託할 수 있는 경우는 極히 限정되어 있다.

따라서 無許可操業, 漁業規則違反 등의 問題는 通常 沿岸國의 裁判所에서 取扱되고, 外國漁船 또는 船員에 대해서 差別的으로 不當한 判決이 내려지는 등 例外的인 狀況에 있어서만 本國政府는 外交保護權을 行使할 수 있게 되었다.

3) 川崎健·田中昌一, 前揭書, p.42.

200海里 制度와 漁業合作投資에 관한 小考

위와 같은 點들을 考慮할 때 UN海洋法 協約下에서의 200海里 經濟水域에 대한 沿岸國의 管轄權은 거의 決定的인 것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4) 國內立法에 의한 200海里 水域

海洋法協約下에서는 여하튼 剩餘分原則이 明記되어 있지만, 各國의 國內立法下에서는 이 原則의 採用은 반드시 定해져 있지 않다. 國內立法에 基한 200海里 水域制度에서는 他國漁船의 入漁를 認定하는가 않는가, 認定한다면 어떤 條件下에선가, 또한 어떠한 漁獲割當을 할 것인가 하는 決定은 모두 沿岸國의 裁量下에 놓여 있다. 특히 美國, 소聯, 카나다는 他國漁船의 入漁에 관해서는 基本的으로 段階的인 排除(phase out)라는 立場을 取하고, 自國의 沿岸漁業의 進興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여러 나라의 動向은 入漁問題를 資源保存의 問題와는 無關係한 政治的, 經濟的 問題와 連結시키려는 傾向마저 나타내고 있다.

가장 代表的인 例로 우리의 北洋漁場이 있는 美國의 경우를 본다면,

美國은 1977年 3月부터 “1976年 漁業保存管理法(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of 1976)”을 施行하였던 바, 이 法律에 의하여 200海里의 漁業保存水域을 設定하고 이 水域内에서 排他的인 漁業管理權을 가지며, 이 水域에서 操業하는 外國漁船은 美國政府의 許可를 얻어야만 하게 되었다. 許可를 받는 데는 許可料와 漁獲料, 즉 入漁料를 支拂하여야 한다. 外國漁業에 대한 總漁獲水準은 魚種마다 決定하는 適正漁獲水準(optimum yield) 内에서 美國漁船에 의해 捕獲되지 않는 剩餘分으로 하고, 美國政府는 그것을 각 入漁國에 配分割當하고, 各國은 그 割當量의 範圍内에서 漁獲할 수 있다. 여기서 適正漁獲水準이란 MSY를 食糧生產, 리크리에이션, 經濟, 社會, 自然保護 등의 要點을 고려하여 國家에 最大의 全體的 利益을 가져 오도록 修正한 것으로서 漁業管理의 基準으로 導入되었지만, 이것은 生物資源學의 意味에서의 資源利用許容限界 以外에 社會經濟的 要素를 감안한 基準으로 定量的인 面에서 不明確한 것이며, 實제로는 美國漁業의 維持와 外國漁業의 排除라는 觀點에서 運用될 危險性을 内包하고 있다.

그 후 1980年 12月에 成立된 “美國漁業促進法(American Fisheries Promotion Act)”에 기하여 1976年 漁業保存管理法에 改正이 加해진 것이 “매그너슨漁業保存管理法(Magnuson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이다. 이 法律의 核心은 美國의 200海里水域에의 外國漁船의 入漁을 減減시킴으로써 美國의 沿岸漁業의 振興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즉, 外國漁業의 總許容漁獲水準의 決定方法에 있어서 美國의 漁獲量의 水準如何에 應하여 一定한 算式으로 自動的으로 削減하는 方式을 採用하여 이른바 段階的 排除를 노리고 있다. 또한 美國은 沿岸漁業을 促進함에 있어서는, 漁獲된 水產物을 消費할 만한 國內市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法律에서는 入漁問題를 水產物輸出問題와 關聯지우고 있다. 그리고 이 法律에는 外國에 대한 漁獲割當의 決定에 있어 다음의 點을 判斷基準으로 하는 뜻이 明記되어 있다(同法 第201節).

① 當該國이 美國의 魚類 또는 漁業製品의 輸入에 관하여 關稅障壁 혹은 非關稅障壁을 計하고 있는가 또는 其他方法으로 市場에의 接近을 制限하고 있는가의 興否 및 그 程度 ② 當該國의 水產物

수 산 경 영 론 집

의 貿易을 위하여 現存하는 機會 및 새로운 機會를 增進하는以外에 특히 美國의 加工業者 혹은 美國의 漁業者로부터 魚類 또는 漁業製品의 購入을 통하여 美國과 協力하고 있는가의 與否 및 그 程度 ⑤ 當該國과 그 渔船團이 美國의 漁業規則의 實施에 관하여 美國과 協力하여 왔는가의 與否 및 그 程度 ⑥ 當該國이 自國의 國內消費를 위하여 漁業保存 水域에서 漁業되는 魚類를 必要로 하고 있는가의 與否 및 그 程度 ⑦ 當該國이 其他의 方法으로 美國의 健全하고도 經濟的인 漁業發展에 寄與하고 있는가 또는 이를 助長하고 있는가의 與否 및 그 程度 ⑧ 當該國의 渔船이 當該漁業에 慣習의으로 從事하여 왔는가의 與否 및 그 程度 ⑨ 當該國이 漁業의 調査 및 漁業資源의 識別에 관하여 美國과 協力하고 있는가 또한 이에 상당히 寄與하고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정도 ⑩ 其他 國務長官이 商務長官과 協力하여 適當하다고 보이는 事項을 判斷基準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요컨대 美國漁業의 振興을 第一義의으로 생각하고, 그 市場을 開發하기 위한 外國의 協力を 漁獲量의 割當과 結付시키는 方式을 導入한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美國이 특히 極端의이지만, 다른 遠洋漁業을 保有하고 있지 않은 國家의 一般的의 行動樣式으로 되어가고 있어 他國의 200海里 水域에서의 入漁를前提로 하고 成立하고 있는 遠洋漁業의 存立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5) 200海里 體制의 背景과 展望

200海里 制度는 根本의으로는 開發途上國의 資源내셔널리즘과 經濟的 地位向上에의 強烈한 意慾에 근거한 것으로 一部 先進國의 資源獨占을打破하고 自國의 經濟發展에 有用하게 쓰고자 한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200海里 體制의 論議는 當初는 南北對立의 樣相을 보였었는데, 先進國中에서도 美國, 카나다와 같이 漁業水準이 後進의인 諸國이 自國의 沿岸性 漁業의 保護의 觀點과 개발도상국에의 政策的 配慮에서 200海里 體制의 大勢에 同調한 것이 이 體制의 定着化에 크게 作用하였다.

이러한 나라들은 自國의 近海漁場의 자원이 先進의인 外國漁船의 操業에 의해 收奪되고 自國의 沿岸·近海漁業이 壓迫되고 있다는 認識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自國의 漁業의 보호와 發展을 위하여는 外國漁船을 排除하도록 하는 漁民의 壓力を 받고 있었다.

또한 公海自由의 原則은 自由競爭의 經濟原理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自由競爭體制下에서는 低能率의 企業은 도태되고 高能率의 企業은 生存하여 그 占有率을 높인다고 하는 過程이 따른다. 자유 경쟁은 經濟的인 效率과 活力を 保持한다는 點에서는 有効한 반면, 經濟的 強者의 論理라는 面을 가지고 있다. 자유경쟁이 초래하는 資源收奪이라는 缺點은 國際의인 漁業協定에 의한 規制措置로도 防止할 수 있을 것이나 자유경쟁이 招來한 資源配分의 憲차 즉, 事實上 경쟁력이 있는 漁業先進國에 자원의 이용과 取得이 기울어진다는 것은 公海自由의 원칙하에서는 방지할 수 없다. 200海里 體制는 從來의 經濟的 強者인 先進漁業國에 기울어진 資源配分의 傾斜를 是正하기 위한 것이며, 落後된 漁業을 가진 沿岸國의 입장에서 본다면, 自國漁業의 진흥과 入漁料收入에 의한 所得向上의 意味를 가질 뿐만 아니라 漁場·資源 등의 原始的 生產手段의 基礎保有를 確立하는 것이다.⁴⁾

4) 清光照夫·岩崎壽男, 水產經濟, 恒星社 厚生閣, 1982, p.195.

200海里 制度와 漁業合作投資에 관한 小考

한편, 200海里 制度는 水產資源의 管理·利用權限의 國際的인 分權化를 초래하여 從來 多國間의 國際漁業條約을 有名無實하게 만들고 水產資源의 適당한 관리와 이용을 저해하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廣大한 沿海域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간에 富의 不公平을 초래할 요소가 多分하다. 그리고 海洋法協約이 發効하는 것은 60個國이 批准 또는 加入한 後 1年이 경과된 때로서 向後數年이 걸릴 것이지만(우리 나라는 1983. 3. 14에 署名을 하였으나 批准은 아직 하지 않고 있음), 發効 以後에도 問題가 성질 餘地가 많다. 批准을 한 국가는 당연히 協約에 구속되지만 하지 않은 국가는 그렇지 아니하다. 批准을 한 國家間의 關係, 한 國家와 하지 않은 國家間의 關係, 하지 않은 국가간의 關係가 복잡하게 韓하여 國際海洋秩序는 정리되기 보다는 더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3. 遠洋漁業의 運營方式

200海里 水域體制下에서의 遠洋漁業의 運營方式은 200海里 水域宣布國家의 對外漁業政策如何에 의존하는 바 크다.

200海里 水域을 선포한 각 沿岸國은 自國漁業의 開發과 振興策을 策定하고 自國水域에 있어서의 外國漁業의 活動에 대한 政策을 수립하고 있는 데 이를 類型別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⁵⁾

① 入漁主體型은 自國漁業을 優先시키며 外國入漁는 自國에 餘分이 있을 경우 認定하되 장래 減少시킨다. 다만 外國入漁는 政府가 協定에 의하여 認定하는 나라가 많다. 合作投資事業은 自國漁業發展에 필요한 最小限度에 局限시키며(加工業은 別途), 共產主義國家에서는 그 設立이 곤란하다. 한편 海上買入加工, 技術提携, P/S方式 등에 의한 協力可能性이 있다(美國, 카나다, EC, 스페인, 소련).

② 入漁·合作投資併存型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⑦ 入漁漸減, 合作投資推進型에 있어서는 入漁는 先進國에서는 政府間協定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밖에 民間個別 베이스나 民間協定에 의하기도 한다. 合作投資의 推進方法에 있어서는 새로운 漁業, 새로운 漁場의 개발을 합작투자사업에 의존하는 국가와, 自國漁業開發의 相當部分을 合作事業에 의존하는 국가가 있다(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포르투갈, 모리타니아, 가나, 에콰도르, 페루, 미크로네시아).

⑧ 入漁維持, 合作投資推進型은 自國漁業의 개발에 아직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나라로 당분간 入漁를 유지하고 入漁料 및 外國援助의 確保를 위해 努力함과 동시에 合作投資事業을 추진하여 自國漁業開發을 도모하려 한다(파푸아, 뉴기니아, 솔로몬, 길버트, 기타 南太平洋島嶼國, 나이지리아, 가봉, 마다가스카르, 소말리아, 가이아나, 수리남, 南非).

③ 合作投資主體型에 있어서는, 外國漁業은 합작투자만을 원칙으로 하고 入漁는 認定하지 않는 방침을 취하지만 합작투자사업 前年程度의 開發操業과 限定된 入漁를 認定한다(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필리핀, 인도네시아, 몰다이브, 모로코). 또한 外國漁船의 入漁實績이 그다지 없고 新規開發을 합작투자사업에 기대하기도 한다(방글라데시, 멕시코 이외의 中南美諸國, 인도).

5) 日本貿易振興會, 200カイリと世界の水産, 1978年 6日.

수 산 경 영 론 집

이와 같은 각 沿岸國의 對外漁業政策에 따라 遠洋漁業에 있어 취할 수 있는 운영방식은 크게 入漁와 합작투자로 나눌 수 있다.

(1) 入 漁

入漁는 他沿岸國의 漁業水域에서 入漁料를 지불하고 漁獲하는 것이다. UN海洋法協約에도 入漁料의 徵收規定은 들어 있는데, 入漁料의 性格은 마치 漁場所有者로서의 沿岸國이 賦課하는 地代와 같다.

入漁料의 水準과 決定方法은 國家에 따라 各樣으로 一般的인 原理는 없다. 賦課方式은 個別로 漁獲實績에 따라 徵收하는 方式과 年間總額을 國가마다 一括先拂(lump sum)하는 方式으로 大別된다. 또한 賦課基準은 漁船隻數, 漁船噸數, 漁獲量 또는 이들을 복합시킨 다양한 形태로서, 대체로 漁獲金額에 대한 比率은 2~5% 정도가 많다.

200海里 水域制實施 以後의 우리 나라의 入漁料支拂狀況을 보면 <表 1>과 같은 바, 1981년 이 후에는 2천만달러를 넘고 있어 遠洋業體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더구나 入漁料는 매년 높은 비율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表 1> 年度別 入漁料 支拂狀況 (單位 : 千弗)

國 別	年度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豫定)
美 國		367	487	1,270	2,667	3,595	6,124	9,117	11,500
モ リ タ ニ ア		3,592	3,676	1,608	4,474	7,921	8,310	1,259	5,041
モ ロ コ				946	873	6,629	8,522	6,480	3,840
세 이 셀					540	400	500	1,250	806
其 他			854	2,371	2,992	1,984	1,888	2,335	2,345
計		3,959	5,012	6,195	11,546	20,579	25,344	20,441	23,977

出處 : 水產廳

일반적으로 入漁料의 水準은 沿岸國政府가 漁場을 他國의 漁業者에게 開放하고 오로지 入漁料收入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一種의 販賣者 獨占의 價格形成과 類似한 市場메커니즘이 작용하게 되겠지만, 地代가 순수한 經濟的 關係以外에 兩階層間의 對立的인 社會緊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前提한다면, 入漁料에 있어서도 沿岸國은 入漁國의 요구와 入漁者의 經濟條件 등을 考慮함으로써, 入漁料의 水準을 公權力下에서 決定할 수 있다. 따라서 入漁者側에서 보면 入漁料란 주어진 것으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漁業에 있어서는 短期的으로는 資本의 投入調節을 자유롭게 대응시켜 가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入漁者의 입장은 약한 것이 보통이다.⁶⁾

한편 沿岸國政府는 일반적으로 自國의 沿岸海域을 地代收取의 場所로서 開放하는 것보다는 自國의 水產資源을 장래 계속 유지하고, 또한 自國의 漁業振興의 장소로서 활용하려는 意圖가 強하다. 이 때문에 自國에의 揭陸義務를 賦課하고, 合作投資企業에의 優先割當, 自國水產物의 輸入 등의 條件을 붙여 入漁를 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히 入漁料를 지불하면 入漁할 수 있다는 方式으

6) 清光照夫·岩崎壽南, 前掲書, p.170.

200海里 制度와 漁業合作投資에 관한 小考

로부터 沿岸國의 漁業政策의 一環으로서 外國의 入漁를 運營하는 方式으로 移行하고 있어 入漁問題는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2) 合作投資

合作投資는 他沿岸國에 合作投資企業(Joint venture)을 設立하여 그 나라의 企業으로서 漁業을 營爲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企業의 海外投資의 方式으로는 所有形態에 따라 單獨投資(完全所有投資)와 合作投資로 나눌 수 있다.

單獨投資는 1個 企業體가 資本受入國에 設立된 子會社의 株式을 完全所有하는 것으로, 子會社의 經營에 外國株主의 간섭을 排除하고 企業秘密保持 등 專斷的인 經營管理의 統制를 할 수 있는 長點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單獨投資는 資本受入國이 開發途上國인 경우 내셔널리즘의 批判, 즉 外國企業의 摧取·收奪이라는 非難을 면치 못하고 따라서 收用(expropriation)의 對象이 될 우려가 많다.

한편 合作投資는 相異한 國家의 2개 또는 그 以上의 企業體들이 永久的 基盤위에서 特定企業體에 參與하는 것이다. 여기서 參與(participation)는 資本에는 限定되는 것은 아니고 製造過程, 特許, 商標, 管理的 know-how, 기타 企業運營上 重要한 要素 등을 통한 모든 活動을 포함한다.⁷⁾

合作投資의 長點으로는, ① 資本의 節約과 事業包險의 輕減 ② 經營人材의 獲得 ③ 現地의 政治, 經濟, 慣習에 관한 綜合的 知識의 獲得 ④ 現地市場에의 容易한 參入 ⑤ 大衆과의 양호한 관계 등을 들 수 있다.⁸⁾ 이 가운데 大衆과의 양호한 관계란 現地 株主의 存在에 의해 現地民에게 自國企業이라는 意識을 심어 줌으로써 보다 좋은 관계를 맺고, 現地의 民族主義의 感情을 改善시키는 커다란 意味를 지닌 것으로 收用의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다. 한편 合作投資의 短點으로서는 經營管理의 衝突과 利益分配의 減少 내지 制限 등을 초래하기 쉬운 點이다. 投資者들의 經濟的, 社會的 値基準과 利益이 相異하기 때문이다.

위의 두 가지 投資方式 가운데 資本受入國이 開發途上國인 경우 有利한 것은 合作投資方式이다. 이는 開發途上國에서의 合作投資는 土着資本을 보다 生產的인 分野에 配定시키며, 經營管理技術 등의 노우하우를 受入國側에 短期間內에 効果的으로 傳達시키고, 外國投資家の 特定產業 내지 全體經濟의 掌握과 政治的 影響力의 行사를 제거하고, 利益配當金의 移轉과 外國資本의 償還을 最小限으로 감소시킴으로써 開發途上國의 國際收支改善에 寄與하는 機能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合作投資를 嘉勵 내지 強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合作投資는 어떤 대상을 파트너로 삼느냐와 파트너別 所有權의 程度에 따라 여러 形態로 나타날 수 있다. 파트너의 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受入國의 企業體, 政府機關 또는 第3國의 企業體 또는 政府機關이 있는데, 受入國의 企業體와 合作投資할 경우에는 그 企業體는 國內에서相當한 位置에 있는 企業體이기 때문에 새로 形成되는 合作投資企業體에게 生產施設, 市場, 分配機構, 勞動力, 經營層 및 양호한 對政府關係 등을 提供할 수 있다. 受入國의 政府機關 또는 政府企業體와 合

7) 潘柄吉・多國籍企業論, 博英社, 1974, p.175.

8) 龜井正義, 多國籍企業論, ミネルヴァ書房, 1983, p.181.

수 산 경 영 론 침

作投資할 경우에는 그政府가長期的安定을維持하는限長期的利益의維持를 도모할 수 있다.

所有權의程度(持分率)에 있어서는多數位置,少數position,同等position 가운데 어느것을取할 것인가는生產物의性質,受入國의政治·經濟·社會的環境,外國企業體의資本,經營資源의規模 및外國企業體의經營層의合作投資에 대한態度등에의하여決定된다. 그러나開發途上國에서는外國企業에의한合作投資企業의多數統制를排除하는傾向이政府政策이나國民의壓力에의하여增加하고있는데,비록外國企業體가少數position를取한다고하더라도優越한經營ability이나技術的노우하우를가진다면management契約이나技術契約을통하여合作投資企業體의經營權을掌握할 수 있다.

우리나라漁業의海外投資狀況을보면〈表2〉와같이매년多少增加하는趨勢에있다.投資形態로는少數持分의合作投資가대부분이며,投資內容은우리측에서는漁船이많고相對側에서는經營計算이곤란한土地,利權등의資產形態가많다.合作投資의파트너를보면美國등一部先進國을제외하고는中南美,西部아프리카및南太平洋의開發途上諸國의企業또는個人이대부분이며,投資部門도美國企業과의漁獲物買入加工등을제외하고는漁業이대부분이다.

이러한漁業合作投資는개발도상국측에서보면自國의未利用資源을開發하고 이를他國에輸出함으로써雇傭增大와外貨稼得에기여한다는의미를가지며,우리측에서보면資本進出이라는의미의에200海里體制下에서의水產物의확보내지操業實績의實質적인확보라는의미를지닌것이다.

그러나漁業合作投資에 있어서는다른海外投資에있어서와마찬가지로여러가지制約要因이수반되고있고,受入國이開發途上國인경우특히그러하다.一般的으로海外投資리스크의문제로거론되고있는그러한制約要因으로는①資本受入國의政情不安·社會不安②受入國政府의政策및制度의變更③迅速·充分な補償敘는國有化또는收用④外換管理上稼得利潤의送金또는投資元本의回收制限및複數換率設定⑤一定比率의現地인의雇傭및教育訓練強制⑥엄격한操業規則⑦利益處分에관한強制⑧國際的인二重課稅⑨內資比率51%以上의義務化등을들수있다.⁹⁾

한편資本受入國側에서는이러한制約要因을감안하여投資法이나投資協定으로投資保證을행하고있으나,諸般環境의變化에따라그實効性은減殺되기때문에,投資保證은投資國側에서講究하는것이더effecive이다.그가운데가장代表的인것이海外投資保險制度이다.이制度는海外投資에따르는전쟁위험,收用危險,送金危險을對象으로危險負擔을分散·輕減시키고자1948년이후先進諸國에서채택되어왔는데,우리나라에서도1972년12월30일輸出保險法의改正에따라新設되었다.이法律에의하여擔保되는海外投資危險은대체로①海外에投資한元本및果實이나,海外投資者의不動產에관한權利등이外國政府에의하여또는전쟁·내란등의사태에의하여侵

〈表2〉 海外投資狀況 (單位:千弗)		
年度	投資件數	投資額 (未出資分包含)
1976	7	1,023
1977	10	3,546
1978	13	3,728
1979	18	6,374
1980	19	6,399
1981	24	6,669
1982	25	6,729
1983	32	7,107

出處:水產廳

9) 商法研究室門下生編, 會社法의 現代的課題, 法文社, 1981. pp.298~304.

200海里 制度와 漁業合作投資에 관한 小考

害되는 경우와 ⑤ 위의 元本, 果實 및 不動產에 관한 權利 등의 喪失에 의하여 取得한 金額을 外國政府의 換去來의 制限(또는 금지)이나 또는 전쟁·内란 등의 사태로 말미암아 本國에의 送金이 不可能한 경우를 말한다(同法 第29條의 2 參照). 이 制度의 運營主體는 政府가 되고, 實質的인 業務와 基金의 管理는 政府代行機關으로서 大韓再保險公社가 수행하고 있다(同法 第31條). 그리고 이 保險의 填補率은 損失額의 90%로 되어 있다(同法 第29條의 3 第1項). 漁業合作投資 역시 海外投資保險의 適用對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其他의 保證制度로서는 資本受入國과의 租稅條約(二重課稅防止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投資保護促進條約 등의 締結과 投資國政府의 海外投資企業에 대한 融資 등 財政上의 援助를 들 수 있는데, 後者は 日本의 경우 海外漁業協力財團이 그 機能을 擔當하고 있다.

4. 結語

資源내셔널리즘으로부터 飛火된 200海里 水域制는 海洋의 分割占據를 國際的으로 보편화시키기에 이르러, 全海洋面積의 35%, 魚族資源의 80~90%가 沿岸國의 主權的管轄下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沿岸國은 自國의 200海里 水域內에서 水產資源의 保護管理에 관하여 強力한 決定權을 가지게 되었다. 沿岸國들은 自國의 漁業發達水準에 따라 200海里 水域에 대한 여러가지 對外漁業政策을 펴게 되었는데, 가장 通常的인 方法이 入漁認定과 自國內의 合作投資誘導이었다. 入漁는 美國카나다와 같은 先進國의 경우, 自國의 漁業振興을 위한 暫定的措置로서의 性格을 가지고 있어 段階的으로 排除될 運命에 있지만, 開發途上國에서는 重要한 財政調達의 機能을 수행하고 있어 계속 유지될 전망이나 入漁料나 其他 諸般負擔이 점차 가중되고 있어 入漁國側에 不利하게 變化되고 있다. 이에 반해 漁業合作投資는 沿岸國에 投資開發輸出, 屉傭創出, 漁撈技術移轉 등의 利點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개발도상국이 환영하는 것으로, 이는 投資者側에서 보면 비록 컨트리·리스크의 負擔問題가 따르기는 하나 入漁方式보다 有利한 편이다. 따라서 合作投資는 장래 비록 遠洋漁業에 대신할 程度의 規模와 多樣性을 갖지는 못하겠으나 有利한 入漁手段으로서 比重을 높혀 갈 것으로豫測된다. 그러므로 漁業資源의 長期安定的確保라는 見地에서 漁業合作投資를 위한 綜合對策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遠洋漁業의 악화된 資金事情을考慮하여 中心漁業과 漁業者團體의 提携出資, 漁業合作投資를 행한 企業에 대한 融資支援, 現地事情에 精通한 綜合商社의 投資進出誘導, 投資리스크에 대한 適切한 补償對策 등은 重要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資源내셔널리즘의 發展段階를 보면 資源保有國의 利權料引上→資源產業自體에 대한 資本·經營參加→流通·加工등 다운스트림部門의支配·參加→資源의 生產·供給量의 調整·統制 및 政治的影響力의 行事라는 過程을 거치는데,¹⁰⁾ 이러한 點을 漁業合作投資에 관하여 考慮한다면 長期적으로는 결국 우리의 沿近海漁場의 보호관리와 새로운 公海漁場의 開發이 가장 重要한 課題일 것이다.

10) 玉鍾, 多國籍企業經營論, 法文社, 1982, p.383.

수 산 경 영 톤 짐

參 考 文 獻

- 清光照夫・岩崎壽南, 水產經濟, 恒星社 厚生閣, 1982.
- 大海原宏 外4人, 現代水產經濟論, 北斗書房, 1982.
- 川崎 健, 魚の資源學, 大月書店, 1983.
- 川崎 健・田中昌一, 200カイリ時代と日本の水產, 恒星社 厚生閣, 1981.
- 日本貿易振興會, 200カイリと日本の水產, 1978.
- 潘柄吉, 多國籍企業論, 博英社, 1974.
- 玉璣鍾, 多國籍企業經營論, 法文社, 1982.
- 龜井正義, 多國籍企業論, ミネルウア書房, 1983.
- 商法研究室門下生, 會社法의 現以的課題—無碍 徐燉玆 博士 華甲紀念, 法文社, 1981.
- 外務部 國際機構條約局, 유엔海洋法協約 國文翻譯本, 1982, 月刊 現代海洋 1982年7月號, 通卷 147號.
- Magnuson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U.S.A. as amended through January 12, 1983.

A Study on the Overseas Investment of Fisheries under the 200 Nautical Miles System

Ung-Sang Chee

Summary

The international marine system was plunged into the age of divided occupation with th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Law of the Sea in April, 1982.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200 Nautical miles set up by the Convention confirms the assertions of many coastal states whose fishing industries are not well-developed. However, it is unfavorable to the countries whose fisheries are being carried on in deep-sea, because the coastal state has sovereign rights to conserve and manage living resources in it. Under the circumstances the Korean deep-sea fisheries had to find ways out of the difficulties. The ways may be divided into two ways, namely, licensed fishing and joint-venture fishing. The former type becomes unfavorable to foreign fisheries because of decreasing quarts, rising fees and remunerations. The latter type properly meets the wishes of countries concerned and has some merits.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of bearing the risk in case of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 insurance system is effective to make up for the loss from the risk, although not perfect.

The deep-sea fisheries depressed now by accumulated difficulties need mor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for the active promotion of overseas joint-venture.